

유럽의 食品添加物 行政

調 査 部

① 네델란드

네델란드의 식품첨가물의 규제담당관청은 공중환경위생성에 있지만 식품에 관련된 규제의 법률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그 식품을 담당하는 농업성과 경제성에 협의를 거친다.

식품첨가물을 함유하거나 식품용 화학물질로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지정할 경우에는 독성 그외의 분야에 전문가, 정부기관의 담당자, 제조업자, 소비자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상품법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위원은 16명)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이 자문위원회에는 검토 분야별로 4~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있다.

식품을 규제하는 법률에는 다음의 5종류가 있고 식품 중에서도 식육제품은 별도의 법률에 의한 감시체제로 규제를 하고 있다.

(1) 상품법(또는 식품법)

음식물로 간주하지 않은 화장품, 세제, 비누, 식품포장재, 조리용기 및 소아용 장난감도 규제대상이며 식육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감시업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6개의 감시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2) 식육감시법과 가축법

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해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29개의 식육감시기관은 식육과 식육제품 및 가축의 감시를 행하고 있다.

(3) 농약법

농약 사용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또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의 허용한도를 정하며 이에 대한 감시는 식품감시기관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4) 농약품질법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술한 각 법률은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낙농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었다. 품질보증의 목적으로 품질등급의 규정도 설정되어 있고 생산자와의 밀접한 협력 아래 공인된 공법 또는 사립의 시험기관에서 등급을 매긴다. 법률은 농업수산성에 소속하는 농업감시기관이 감시업무의 소속관청이 되어 있지만 식품감시기관과 식육감시기관도 중복되어 이, 법률에 의해 감시를 행하고 있다.

이상 식품첨가물에 관련된 식품감시는 상품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나 16개의 식품감시기관에는 화학분석, 생화학 및 미생물학적 검사시설이 있고, 1978년 현재 총 6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은 지정품목 이외의 것은 사용할 수 없고 착색료등 EC에서 정한 리스트를 채용하고 있다. EC와 합의되지 않은 착색료 및 용제등은 독자적 리스트가 있고 이 리스트에 수재되지 않은 화학물질도 전통적으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네델란드 식품규제의 특징은 정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주요식품등(예를 들면 식육제품, 유 및 유제품등)에 관련된 제조업자, 판매업자 협동조합 등

을 회원으로 하는 평의회가 있고 평의회는 중앙정부가 정한 규격기준을 실시함에 있어서 발언권이 클 뿐만 아니라 평의회가 독자적으로 규격기준을 설정한 것도 있으며 정부가 정한 규격기준도 평의회 동의 없이는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식품분야에 있어서 평의회가 이와 같은 큰 발언권을 갖고 있는 것은 1930년대 대공황시대에 정부가 식품감시를 실시하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식품업계(평의회)가 그 비용을 담당하게 된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된 것이다. 현재 식품감시업무에 필요한 예산의 약 절반을 평의회가 담당하고 있어 그 발언권이 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 또 각 자치단체의 자치권도 상당히 강화되어 실제로 감시업무는 자치단체의 감시원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

② 서 독

서독에서의 식품첨가물의 규제 담당관청은 연방보건청에서 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식품의 시험, 감시 등은 각주에 위임하고 있다. 식품 등을 규제하는 법률은 식품전반을 규제하는 식품 및 소비 생활용품법 외에 개별식품을 규제하는 식육감시법, 밀크법, 마아가린법, 酒법 등이 있다.

식품 및 소비생활용품법에는 식품과 용기포장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며, 이외의 장난감, 의류, 안경 등 인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가정용품, 화장품, 담배 등도 규제 대상이 된다.

식품 등에 대한 감시는 각주에서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동물로부터 얻어진 식품의 감시는 가축담당국(농업부)의 소관이고 식물성 식품, 담배류, 화장품, 기타 소비성 생활용품은 보건담당부국(보건부 또는 내무부)의 소관이다. 시, 군, 지방행정구역 등의 주 이하의 행정단위에 있어서의 행정기구는 차만별하지만 감시업무는 통상 공안부국 또는 경찰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최근 주에 있었던 공안부국의 권한이 기존 기술행정부국으로 이양되었고 따라서 감시담당관청은 지방정부부국, 공안부국 또는 경

찰관서이다. 이와 같이 11개주가 연방법에 의해 별개의 조항을 정해 연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방과 각주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4개의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식품의 감시, 시험과 판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정기적(년 2~3회)으로 연방청소년보건성의 대표들이 협의하고 있다.

① 각주 주임가축담당관의 연구 그룹(Argevet)과 Argevet 식품감시위원회

② 각주 주임의로담담당관의 연구 그룹의 식품 및 식품위생 감시위원회

③ 각주 및 연방보건사무소의 식품화학전문가의 작업부회

④ 식품위생에 대한 가축전문가의 작업부회

서독에 있어서 식품규제의 특징은 연방제라는 국가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법의 실시면에 있어서도 각주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연방 정부는 기본이 되는 법체제와 지도기준을 만들고 법의 실시는 각주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까지도 직접 감시하며, 연방정부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많은 주에서는 말단식품업자의 입회하에 검체수거, 조사 등을 경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③ 영 국

영국에서의 식품첨가물의 규제 담당관청은 농림수산식량성에 있다. 내무성의 보건사회보장청은 보건위생상의 관점(화학물질에 대한 독성학적 평가 등)에서 농림수산성의 상담을 받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첨가물의 사용허가 등 법적수속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식품 등을 규제하는 법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식품의료법이 기본이 되어 있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는 각각 동일명칭의 독립된 법률, 식품의약품법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각각 독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식품의약품법은

본래 식품 의약품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1968년에 의약품법이 개정되고 그 후의 약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식품을 규제하는 법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정해진 규칙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식품 중 산화방지제규칙
- ② 식품 중 용제규칙
- ③ 식품 중 착색료규칙
- ④ 식품 중 유허제와 안정제규칙
- ⑤ 식품 중의 인공감미료규칙
- ⑥ 식품 중의 보존료규칙
- ⑦ 식품 중의 기타 첨가물의 규칙

이 법칙에다 EC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 이외의 식품첨가물도 어느 정도 실제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 예를 들면 식품 중의 용제규칙에는 캐리어 용제는 “포지티브리스트”가 정해져 있지만 추출용 용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식품관리법 규정의 실시는 각 지방의 식품의약품국에 위임하고 중앙정부는 법률제정의 역할만 하지만 그 해석은 재판소에서, 실시는 지방청에서 하며 지방청이 잘못 법을 운용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하게 되나 식품행정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태는 별로 없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런던자치구와 군회의의 88개 지방자치단체 식품담당국이 있고, 스코트랜드에는 지역과 섬에 12개, 북아일랜드에는 26개의 지방회의가 공동으로 5개의 공중위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을 감시할 때에는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공인분석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의뢰한 식품, 가정용품 등의 분석을 실시한다. 공인분석사는 계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영국에 있어서 식품규제의 특색은 법시행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규제시에는 산업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예

를 들면 식품 잔류농약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기준치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농약의 등록 자체가 강제적인 것으로서 농약안정예방계획에 의해 농약제조업자가 자발적 등록과 자발적인 자료의 제공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EC가맹국 중에서도 특이한 입장에 있다.

④ 덴마크

덴마크에 있어서 식품첨가물의 규제담당관청은 환경성이다. 실제로는 환경성에 소속하는 국립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허가하며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수입자의 등록도 받는다.

식품일반을 규제하는 법률에는 식품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성령에 정해진 각종 규제가 있다.

- ① 식품과 첨가물의 규제에 관한 성령.

타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하며 식품과 첨가물에 관한 수입등록의 의무를 규정한다.

- ② 식품판매 등에 관한 성령.

식품판매시 저장, 포장, 운송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③ 식품과 첨가물제조업자의 허가에 관한 성령.

제조업의 허가에 관해 규정한다.

- ④ 식품소매 등에 관한 성령.

그 식품 제조가 타법령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식품의 소매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⑤ 식품첨가물에 관한 성령.

표시와 식품첨가물의 “포지티브리스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단 식품 중에도 낙농제품과 魚類, 乳와 액상유제품에 관한 특별법, 낙농제품에 관한 특별법, 卵類와 그 제품에 관한 특별입법, 마아가린에 관한 특별입법, 魚 및 魚製品 등에 관한 특별입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